

#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이상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00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. 5. 24.

발의자 : 이상숙 의원 등 1명

## 1. 개정이유

- 소상공인 지원계획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시장의 책무 및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규정을 신설함.(안 제4조)
-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지원을 경영안정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함. (안 제5조)
- 소상공인 관련 단체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(안 제9조)

## 3. 개정조례안 : 별임1

## 4. 신 · 구조문 대비표 : 별임2

## 5. 관계법령 발췌서 등 : 별임3

## 6. 예산수반사항 : 별임4 (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)

## 7. 입법예고 결과 :

## 8. 기타 참고사항 : 집행부 검토의견서

## 【붙임 1】

#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제3조의 제목 “(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)” 을 “(경영안정지원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영지원” 을 “경영안정” 으로 한다. 제4조부터 제7조까지,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5조부터 제8조까지,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, 제4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제9조(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)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【붙임 2】

#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제3조(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) ①</u>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  1. ~ 5. (생 략) ② (생 략)	<u>제3조(경영안정지원) ①</u> <u>경영</u> <u>안정</u> 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<u>제4조 (생 략)</u> <u>&lt;신 설&gt;</u>	<u>제5조 (현행 제4조와 같음)</u> <u>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 안산시장(이</u> <u>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소상공인</u> <u>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</u> <u>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소상공</u> <u>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</u> <u>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</u>
<u>제5조 ~ 제7조 (생 략)</u>	<u>제6조 ~ 제8조 (현행 제5조부터 제7</u> <u>조까지와 같음)</u>
<u>제8조 · 제9조 (생 략)</u> <u>&lt;신 설&gt;</u>	<u>제10조 · 제11조 (현행 제8조 및 제9</u> <u>조와 같음)</u> <u>제9조(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)</u> <u>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</u> <u>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 <u>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</u> <u>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</u>

# **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의안 번호	3001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7. 6. 22.  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## **□ 수정이유**

- 소상공인 지원단체의 범위가 광범위 하므로 상위법규정에 의거한 소상공인 관련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화 하여 지원범위를 확정 함

## **□ 주요골자**

- 소상공인 지원단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.(안 제10조)

## **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**안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  
정한다.**

안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3조로 한다.

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)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 
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 
률」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중 같은법 제25  
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<u>제3조(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)</u>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 ②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u>제3조(경영안정지원)</u> ① ----- ----- 경영안정 ----- -----.  1. ~ 5. (현행과 같음) 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</u>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개정안 4조와 같음)</p> <p>제4조(개정안3조와 같음)</p>
<p><u>제4조 (생략)</u></p> <p><u>제5조 · 제6조 (생략)</u></p>	<p><u>제5조</u> (현행 제4조와 같음)</p> <p><u>제6조 · 제7조</u> (현행 제5조 · 제6조와 같음)</p>	<p>제5조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6조 · 제7조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<u>제7조(보증재원)</u>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.</p>	<p><u>제7조의 2(보증재원)</u> (현행 7조와 같음)</p>	<p>제7조의 2(보증재원)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.</p>
<p><u>제8조 · 제9조 (생략)</u></p>	<p><u>제8조 · 제9조</u>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8조 · 제9조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〈신 설〉	<p><u>제10조(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)</u></p> <p><u>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제10조(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)</u></p> <p><u>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중 같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